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일부개정(개정 2014. 5. 28.)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환경단체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(안 제24조)

- 자연환경보전활동 및 생태계보호활동
- 하천관리 및 수생식물 조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26조,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57조
나. 예산조치 : 12,000천원 정도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28. ~ 6. 16.)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2항 중 “안에서”를 “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연환경보전활동 및 생태계보호활동
2. 하천관리 및 수생식물 조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 (생 략)	제24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군수는 군민, 사업자,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,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	②----------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--.
<신 설>	1. 자연환경보전활동 및 생태계보호활동
<신 설>	2. 하천관리 및 수생식물 조성